

# 農産物生産費에 관한 一考察

## 表 茂 基

<目 次>	
I. 序 言	
II. 農産物 政策價格의 算定方式과 生産費補償方式	
III. 農産物 生産費概念의 定立	
IV.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	
V. 主要 評價性費目的 評價問題	
VI. 結 語	

### I. 序 言

本稿는 農産物價格政策에 있어서 政策價格決定의 基礎로서의 生産費方式이 지니는 妥當性和 生産費概念의 定立에 關聯된 諸問題 및 評價性費目的 評價問題를 理論的으로 檢討하고 우리나라의 農業生産樣式에 비추어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을 試圖해 본 것이다.

農産物의 政策價格을 決定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算定方式이 있으며 이 算定方式의 如何에 따라 價格水準은 顯著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政策價格決定의 指標가 될 算定方式은 그 나라의 國民經濟的인 條件 및 支配的인 農業生産樣式에 根據하여 妥當성이 檢討되어야 하며 더우기 農産物生産費를 이러한 政策價格決定의 指標와 關聯시켜 考察할 적에는 生産費 自體의 究明에 앞서 一算定方式으로서의 位置와 妥當성이 檢討되어야 한다.

또한 農産物의 生産費는 資本制生産의 경우에도 餘他 工業製品의 그것과는 달리 그 決定에 있어서 特殊性을 가지며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制約이 주어진다. 그리고 農産物의 生産費는 그 概念을 如何히 規定하느냐에 따라 生産費調查方法이나 生産費의 構成費目이 相異해 지며 지금까지 生産費의 調査를 圍繞하고 일어난 理論上의 混亂은 그 大部分이 生産費概念 規定에 있어서의 誤謬 내지 異見에 起因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生産費概念의 定立은 政策價格決定의 一指標로서 보다 客觀性을 要求하는 生産費調查에 대하여 그 理論的인 支柱가 되는 것이다.

農產物生産費의 概念을 定立하는 데서 詳細히 다루어 지냈지만 農產物의 市場調整의인 價格은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平均的인 生産條件으로 規定된 生産價格 또는 費用價格(單純 商品生産의 경우)이다. 그리하여 이 最劣等地를 具體的으로 劃定하는 것이 하나의 重要한 課題로 되는데 本稿에서는 이러한 最劣等地를 具體化하는 問題 즉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하는 問題를 몇 가지의 農業生産, 農家經濟 및 流通上의 指標로서 劃定하여 보고자 試圖하였다.

우리나라는 1964年産 米穀을 始發點으로 하여 農產物 政策價格의 算定方式을 從來의 生産費基準方式으로부터 패리티(parity) 價格方式으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이 패리티 價格方式에 있어서도 패리티指數 단으로 政策價格을 決定하는 것은 아니며 生産費推計值, 率勢價格, 物價指數上昇值, 需給事情 其他의 經濟與件이 勘案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다 重要한 것은 패리티價格方式, 生産費補償方式 또는 其他의 諸方式중 現在의 農業生産樣式과 經濟的인 諸般與件에 비추어 果然 어느 것이 가장 適切한 方式인가 하는 것이며 새로운 方式으로 轉換한다는 것이 政策主體의 如何한 意圖와 關聯되는 가를 解明해야 한다는 것이다.

政策價格을 決定하는 算定基準으로서의 패리티價格이나 生産費는 農產物價格政策에 있어서 最低價格을 設定하는 하나의 資料로 利用되지만 現實的으로 收穫期에 集中的인 商品化로 나타나는, 小農經營의 窮迫販賣로 말미암아 價格이 顯著히 低落된 事情에 놓여 있을 때에는 政策價格으로서의 最低價格은 農民의 收取價格으로서는 最高價格을 規定하는 것으로 轉化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 따라서 政策價格을 如何한 算定方式에 의하여 決定할 것인가는 바로 農民에 대한 價格政策의 性格을 規定하는 것으로 된다.

事實 價格政策에 있어서 政策價格의 水準은 農業의 生産政策 내지 構造政策과도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다. 例컨대 米麥등에 長期的으로 低價格政策을 實施한다면 아무리 飯米耕作의 傾向이 濃厚한 우리나라의 農業經營이라 할지라도 生産構造 또는 經營構造에 있어서 低價格政策의 對象이 아닌 혹은 影響이 적은 部門으로 轉換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農業生産高도 經濟의 餘他部門에서와 마찬가지로 生産能力과 生産意志의 函數이며 이때 生産能力이 要素投入의 變化나 技術改善이나 生産基盤 또는 農業制度의 効率性 如何에 依存함에 대하여 生産意志에 作用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은 農民의 生産決定에 있어서 價格의 誘發效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食糧의 自給自足이나 農業

(1) G. P. Kapur, "Prices and Production in Agriculture,"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 XI, No. 2 Apr.-Jun. 1964, pp 457-8.

生産力の 提高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不均衡의 是正이 우리나라 農業에 있어서 아직도 커다란 命題라 한다면 적어도 이들에 대한 適正한 價格의 補償은 重要的 意義를 지니게 된다.

本稿는 農業生産에 있어서 再生産費를 確保해야 한다는 基本的인 立場에서 生産費를 考察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農產物 政策價格의 算定方式과 패리티價格方式 및 生産費補償方式의 本質을 考察하여 우리나라 農業에 있어서는 生産費補償方式이 어찌하여 보다 適正한 것인가를 檢討하여 보자.

## II. 農產物政策價格의 算定方式과 生産費補償方式

一般的으로 資本主義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農業은 一産業部門으로서의 그것이 지니는 獨自인 特性 즉 自然的 技術인 條件, 土地의 有限성과 經營의 獨占, 資本運動의 制限으로서의 土地所有등으로 인하여 非農業部門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停滯의이며 劣勢産業化를 免할 수 없다.

그러므로 農業部門에 대하여는 다른 어느 産業部門보다도 政策的으로 國家가 깊숙히 干與하여 保護 育成하고 있는 것이 通例이다. 이때 農產物에 대한 價格政策은 이러한 國家의 農業政策의 한 側面으로서 生産者인 農民이나 消費者 또는 資本家에 이르는 各各의 階層에 대하여 相違한, 그러면서도 제 各各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國家의 農產物價格政策에 대한 機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生産者에게 農業의 再生産을 保障하고 生産政策 내지 構造政策과 關聯하여 價格 支持 또는 制限으로 生産量을 間接的으로 調節하는 것.

둘째, 農產物價格과 農業所得의 過度의 變動을 避하는 것.

셋째, 農業所得의 妥當한 水準을 維持하는 것.

넷째, 農產物價格水準을 安定시켜 農產物消費를 消費者의 負擔과 關聯시키는 것.

다섯째, 供給不足 또는 供給過剩을 避하기 위하여 農業生産을 可及의 彈力的이게 하고 有效需要에 適應시키며 消費者需要의 變化에 生産을 適應시키는 것.

여섯째, 以上과 같은 機能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安定的 發展에 寄與하는 것.

이와같은 價格政策의 諸機能中에서 農業生産의 保護나 適正所得水準의 維持 또는 消費者 保護등등 如何한 機能에 重點을 둘 것인가에 따라 價格政策의 性格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非農業部門에서의 獨占資本과 農業部門의 前近代的인 小農生産樣

式이 支配-被支配關係로 併存하여 獨占資本에 의한 農業의 不均等的인 把握, 그 一表現으로서의 低農產物價格政策이 政策의 基調로 되고 있는 곳에서는 第一次으로 農業生産의 保護(=再生産의 確保)가 必要하며 이것이 保障된 然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餘他部門과 對比한 所得의 補償이 政策의 目標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農產物の 政策價格은 國家가 이러한 價格政策을 遂行하는데 基準이 되는 價格이다. 그리고 政策價格은 그것이 一旦 決定되고나면 國家의 모든 價格政策이 그것을 指標로 하여 樹立, 執行되는 것이므로 그 水準은 政策目標에 副應하며 適正한 것이 不在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農產物에 대한 政策價格은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 算定方式을 달리하는데 따라 그 水準이 크게 달라진다.<sup>(2)</sup> 이를 우리나라의 算定方式의 變遷과 關聯시키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48年 以後 生産費를 基準으로 하여 政策價格을 決定하였지만 1964年 產米穀을 契機로 패리티價格方式으로 轉換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패리티 方式이란 어떤 農產物の 購買力을 基準時와 같은 水準으로 維持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基準時價格에 農業패리티指數를 乘하여 算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 패리티 方式에는 基準時點과 比較時點間에 價格뿐만 아니라 所得을 均衡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生産費補償方式은 農產物の 生産에 現實적으로 投入되고 또한 再生産을 위하여 必要한 諸費用——物財費, 勞動費, 其他——을 補償해 준다는 것을 算定方式의 基礎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生産費補償方式은 客觀化되지 않는 自家勞動費를 類推評價하는 方法에 있어서 農業部門의 臨時雇賃金에 依存하느냐 都市의 均衡勞賃에 依存하느냐에 따라 前者를 生産費補償方式이라 하고 後者를 生産費 및 所得補償方式 또는 異部門所得補償方式이라고 다시 區分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政策主體의 意圖如何로 政策目標에 따라 力點이 相異해지면 相異한 算定方法은 얼마든지 導出이 可能하지만 政策價格의 算定方式은 基本的으로 ① 패리티方式 ② 生産費補償方式 ③ 生産費 및 所得補償方式의 세 가지로, 또는 ①패리티方式과 ② 生産費補償方式의 두 가지로 크게 區分할 수가 있다.

이러한 算定方式은 어느 한가지라도 결코 完全한 것은 아니며 一般的으로 各各 다음과

(2) 本稿에서는 農產物の 政策價格에 대한 算定方式을 主로 米麥을 例로 들면서 考察한다. 그것은 獨占段階에 있어서 價格政策의 對象은 언제나 商品一般이 아니고 特定商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農產物」이란 用語를 使用한 것은 첫째 그것이 占하는 比重이 크다는 點과 둘째 현재 農林部와 農協에서 生産費를 調査하고 있는 全品目에 걸치는 調査算定方法이 米麥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같은 點에서 批判되고 있다.

먼저 生産費補償方式은 첫째 自家勞賃評價의 困難性과 自給部分의 評價의 困難性을 들 수 있다. 自家勞動의 類推評價에는 農村臨時雇賃金이나 都市均衡勞賃을 使用하고 특히 後者를 異部門所得補償方式이라고 한다는 것은 前述하였거니와 이때에도 農業所得을 異部門의 그것과 同一水準으로 補償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工業에 있어서 賃金以外의 各種 福祉, 厚生, 娛樂, 援護施設이나 費用을 論外로 하더라도 農業生産은 有機的 作物을 對象으로 하는 關係上 勞動期間이 斷續의이며 生産期間보다 짧기 때문에 單位當 賃金水準을 同一하게 하여도 所得의 均衡은 期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農業經營이 複合經營이기 때문에 어떤 特定調査作物의 生産費만을 分割하여 算定하는 것이 困難하다는 點이다.

세째로는 우리나라의 生産費算定에 있어서 取하고 있는 바와 같은 總和平均法에 의한 生産費는 그것이 먼저 生産力을 把握하고 考慮한 然後에 市場의 需給에 對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換言하면 生産力側面이 埋沒되어 버린 調査方法을 取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1964年產 米穀에 있어서와 같이 調査票에 나타난 實際의 生産費는 3—500 원에서 부터 27—2900 원에 이르는 約 8—9 倍의 커다란 費用幅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生産費를 取할 것이냐의 困難性이 있다는 點이다.

生産費補償方式의 以上과 같은 難點에 대하여 패리티方式은 이에 못지 않는 보다 根本的인 弱點을 가지고 있다.

패리티方式에 의한 價格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基準時에 있어서 對都市生活水準을 再現코자 하는 立場에 서서 基準時에 그 農產物이 가지고 있던 것과 同等의 購買力을 가지게끔 現在時의 價格을 設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리티方式에 依하여 基準時와 同等한 購買力을 確保한다는 것은 農業과 非農業間에 있어서 勞動生産性的 向上이 同一한 Tempo로 進展된 다든지 農業內部에 있어서도 農業生産諸力の 結合樣式과 生産力이 恒常 變化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農業과 工業의 不均等的인 發展이라든지 農業 內部의 條件變化를 前提로 해서는 패리티價格은 本來의 意味를 喪失하게 된다. 왜냐하면 商品의 價格은 基本的으로는 그것을 再生産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勞動量에 의하여 規定된다고 하는 法則性을 언제나 滿足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滿足시켜 주는 境遇란 基準時와 比較年次와의 사이에 農業生産諸력과 生産力 및 消費構造와 水準과가 同等하며 또한 그 동안에 農業과 他產業間의 生産性에도 變化가 없는 경우에만 妥當하다. 그러나 이러한 條件은 實際上是 單純한 假定에 지나지 않으며 우선 農業內部에 있어서도 科學

技術의 發展에 의한 새로운 生産諸力이 出現하고 그 導入에 의하여 새로이 農業生産諸力の 結合樣式과 生産力은 언제나 變化 發展한다. 또한 패리티方式은 農業의 生産諸力上的 變化 發展만이 아니라 패리티指數算出의 一基準이 되는 農家購入價格中 農業用品보다 더 높은 加重值를 가지는 家計用品에 대하여도 基準時點과 比較時點間의 比重의 變化가 전혀 考慮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國民經濟의 他的 諸部門과 比較한다면 農業이 가령 資本主義的 生産이라 하더라도 生産力의 發展은 相對的으로 停滯的인 것이며 더욱이 小生産農民이 支配的인 곳에서는 보다 甚하게 停滯的이라고 할 수 있듯이 不均等發展이 一般的인 것이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패리티方式을 取하는 경우에는 生産性이 停滯的인 部門일수록 「再生産에 必要한 勞動量」——生産費라고 해도 좋지만——에 대한 價格으로서는 不利하게 된다.<sup>(3)</sup>

이러한 根本的인 弱點外에도 패리티價格은 또한 그것이 基準時點에 있어서 農產物과 非農產物間의 세레(Schere)의 不存在 即 等價交換을 前提하고 있다는 理論的인 弱點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와같은 難點을 認定하고 便宜上 이를 採擇한다하더라도 實際適用에 있어서는 基準時點의 選定問題, 指數算出의 基礎가 되는 品目の 選定이나 그 加重值를 決定하는 問題等等 그 하나 하나가 패리티價格의 水準에 致命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 算定方式은 政策價格의 客觀性을 追求하는 立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떠한 방식보다도 價值判斷과 政治的 恣意가 介入할 餘地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패리티價格方式에 대한 困難性은 1964年產米穀 以來 우리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 實際的인 基本資料를 檢討하여 보아도 明白해 진다.

① 우선 基本資料의 品目構成을 볼 때 農家購入의 側面에 대하여는 農業用品을 37品目(加重值 337.03), 家計用品을 73品目(加重值 662.97)으로 하고 農村賃料金을 10種(加重值 150.58)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의 農產物價格은 그것이 단지 農業用品(純粹한 物財費)이나 家計用品이나 農業賃料金만이 考慮되고서도 基準時點의 購買力과의 均衡을 期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農產物生産費의 構成費目에서 알 수 있듯이 現在 國家에서 調査하는 再生産費로서의 生産費에는 土地用役費, 資本用役費, 農舍費, 租稅公課諸負擔金, 水利費 등이, 그리고 農家經濟調査에서 家計費로서는 教育費, 醫療費, 交通通信費, 交際費, 教養娛樂費, 冠婚喪祭費 등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3) 白川 清, 「農產物價格政策의 政策價格 II」, 『農業總合研究』 第18卷 第2號, pp. 72—3 參照.

價格變化가 當然히 考慮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基本資料에서는 除外되어 있다. 다만 家計用品中 教育娛樂項目이 加重值 55.31 로서 存置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트(加重值 5.13), 연필(1.89), 新聞代(2.33), 映畫料(1.19), 煙草(44.77) 일 뿐으로 教育費에 該當되는 것은 노트, 연필 뿐이며 이것만으로 올바른 教育費를 反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sup>(4)</sup>

② 總農產物(加重值 1000.00) 中 穀物의 加重值가 476.82 인데 그 中 米穀이 389.92 인에 대하여 麥類는 加重值가 不過 52.69 에 不過하며 특히 大麥은 24.51 이다. 이것은 畜產物의 加重值가 312.87 인데 比較하면 지나치게 적게 策定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加重值는 任意로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各項目(農產物, 農業用品, 家計用品 및 農村賃料金)에 대한 現金 및 現物收入支出額을 各各 1000으로 하는 個別品目의 千分比를 算出하여 그 個別品目의 比率이 千分의 一以上되는 品目을 指數作成에 採擇하고 있다고 하지만 大麥이 畜產物의 1/12 에 不過하다는 것은 過少評價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大麥은 勿論 그 相當한 量이 農民의 主食으로 消費되고 商品化되는 量은 相對的으로 적지만 그래도 1965 年度의 경우 政府收納分만 보더라도 精穀 總 76,221,858 kg 으로 約 2,621.7 百萬원이며 1965 年度의 業態別 農家戶數로 보면 耕種이 98.8%이고 畜產은 不過 0.1 인 것이다. 農產物에 대한 低價格政策은 全農產物에 대하여 實施되는 것은 아니니 그것이 賃金財인 穀物等에 集中的인 것을 特徵으로 한다. 그러므로 만약 大麥等이 加重值에서 過少評價된다면 農家販賣價格指數가 全體的으로 實際以上 높게되며, 그때 耕作을 主로 하는 農家(특히 大麥耕作農家)는 二重으로 損失을 입게 된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우리나라에서 大麥의 경우 低穀價政策이 가장 露骨的이기 때문이다.(第 1 表 參照)

③ 農業用品의 購入價格에 있어서 家畜의 加重值가 168.84 인데 대하여 肥料가 134.99 인 것은 均衡을 喪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家畜의 加重值는 그 大部分이 役牛

<第 1 表> 大麥의 生産費·政府買入價 및 市價比較

單位： 元

區分	年度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政府算定生産費 (A)		1,140	1,287	2,034	2,643	2,997	2,487
政府買入價格 (B)		1,002	1,147	1,147	—	2,295	2,295
B-A		△138	△140	△887	—	△702	△192
年 中 市 價		1,110	1,124	2,154	2,829	2,133	2,026

資料：農林部

(4) 1965年度『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에 의하면 學校教育費는 家計費總額의 4.5%, 家計雜費는 22.8%이지만 各各 93.2%와 73.2%가 現金形態로 支出되며 그 騰貴率도 他項目에 比하여 높을 것으로 推測되나 家計費中 都合 27.3%를 차지하는 이 兩項目이 前記 些少한 몇가지를 除外하고는 거의 除外되어 있다.

(加重值 131.44)의 것이고 나머지는 仔豚과 병아리의 購入分인데 役牛에 대하여는 農村賃料金項目에 役牛賃借料가 別途로 있을 뿐 아니라 基本的으로 農工產物間의 패리티를 維持시키려는 資料에 農民相互間의 流通으로 볼 수 있는 家畜이 肥料보다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는 點도 無理이며 實際로 農家の 年間 購入費中에서 家畜에 該當되는 것이 肥料購入分보다 金額上으로 많다는 것도 커다란 疑問點이다. 더구나 政府의 패리티價格算定の 基本資料인 農協의 『農村物價 및 賃料金總覽 1959—1963』에 依하면 1960年을 100으로 한 家畜의 1963年指數는 133.4임에 대하여 肥料는 112.0으로서 相對的으로 肥料가 뒤떨어지고 있으며 肥料中 大宗을 이루는 硫酸은 1960年을 100으로 할 때 1963年은 95.0, 尿素는 101.8로서 指數自體가 오히려 絶對的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66年 韓國銀行 調查部의 『經濟統計年報』에 依하면 硫酸은 1960年에 45kg 袋當 189 원에서 1963年은 385 원으로 指數는 203.7로 上昇하였고 尿素는 1960年에 25kg 袋當 235 원에서 1963年은 391 원으로 166.3으로 上昇되었다(同年報 p. 288 參照). 農協資料와의 이러한 甚한 差異는 무엇에 起因하는 것인지 疑問이다.

④ 基本資料의 價格調査에 있어서는 月別價格幅이 甚한 경우에는 2倍以上이나 되고 月別 商品化量은 農產物의 一般的인 特性이나 小農의 窮迫販賣등으로 顯著한 差異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年中 平均으로 反映되며 大量出荷期에 暴落現象이 일어나므로 出荷量을 圖外視하고 月別 平均價格에 의하게 되면 結果的으로 높게 評價되어 農家經濟의 實情과의 關聯性이 적을 뿐 아니라, 農家에게 不利한 條件을 造成시킨다.

이밖에도 基準年度選定の 困難問題나 우리 나라의 1960年 11月基準에 대하여 批判點이 많으나 흔히 指摘되는 問題이므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지금까지의 論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農產物政策價格 算定の 基準으로서의 패리티方式은 農業과 非農業間의 不均等的인 發展, 農業內部에 있어서의 生産諸力の 結合樣式과 生産力의 變化發展을 是認하는 限 그의 理論的인 妥當性은 根本的으로 否定되는 것이며 그것을 一旦 捨象하더라도 實際 指數作成過程에서는 都市 및 農村間의 交易條件의 變化를 部分的으로 밖에 包括하지 못한다.

따라서 生産費補償政策에서 패리티價格政策으로의 轉換은 過去의 生産費가 眞正한 生産費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補償하겠다는——적어도 政策價格의 基準을 農業의 再生產費用과 直接 關聯시키고자 하는——方式에 대한 政策主體의 拒否로서 結論지을 수 밖에 없다.

偶然的 一致인지는 모르지만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米穀生産費의 增加率이 1963—



64年間に 44.1%로서 異例的인 上昇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패리티方式으로의 轉換에 대한 直接的인 契機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第2表> 年度別 米穀生産費의 增加率

區分 \ 年度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精穀石當生産費	2,363	2,478	2,514	2,426	3,497	4,681
增加額	31	115	36	△88	1,071	1,184
增加率(%)	1.3	4.8	1.4	△3.5	44.1	33.8

資料：農協, 『農業年鑑』, 1966. 統計 p.137에서 作成

이와 같이 볼 때 패리티方式으로의 政策轉換은 적어도 結果的으로는 政策主體가 生産費補償方式을 拋棄하고 政策價格의 算定을 좀 더 自由롭게 調節할 수 있는 方式에 依存코자한 것으로 結論지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方式이 農業의 再生産의 困難과 農村貧困을 加重시켜 二重構造만을 深化할 것은 必然的이며 우리나라의 農業生産樣式의 特殊性이나 現在의 慢性的인 農產物供給不足을 解決하기 위해서도 政策價格算定의 基準을 農業의 再生産費에 두는 生産費補償方式에 依存해야 할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生産費補償方式의 이러한 妥當性을 前提로 하여 以下에서는 生産費方式 自體가 지닌 問題點에 대하여 檢討코자 한다.

먼저 恒常 理論的인 混亂을 惹起시키고 있는 生産費의 概念에 대하여 그것이 政策價格의 一基準으로서는 如何한 意味를 지니는 것인가를 考察해 보자.

### III. 農產物 生産費概念의 定立

政策價格을 決定하는 基準으로서의 生産費에 대하여 그 概念을 明白히 해야만 한다는 것은 概念如何에 따라 生産費의 調査方法이나 生産費構成費目이 크게 달라지며 實際로 지금까지 이 問題에 대한 相當한 混亂이 있었기 때문이다.

元來 生産費라는 概念은 理論經濟學에서 “價値와 市場價格間에 價値法則을 不明瞭하게 하고 그 作用을 偏倚케 하는 連環을 成立시킨다”<sup>(5)</sup>고 指摘되어 왔다. 이것은 價値와 價格 및 生産費와의 相互關聯을 밝힘으로써 알 수 있다.

資本制商品生産社會에 있어서는 價格이 價値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다면 價値法則이 資本 및 勞動을 그 生産部門으로 끌어들이거나 他部門으로 流出시킴으로써 價格을 價値에 一致시킨다. 그러나 이때의 價値法則 作用에 의한 價格과 價値와의 一致는 그것이 社會的

(5) K. Kautsky, *De Agrarfrage*, 1899, 向坂逸郎 譯 『農業問題』, 上卷 pp. 111-2.

總資本의 경우에 限定된다. 卽 資本主義社會全體로서 考察하면 諸商品의 總價値는 總生産價格에 一致한다. 그것은 어떤 주어진 一資本에 대하여는 그의 有機的 構成의 如何를 묻지 않고, 社會的 總資本의 單純한 可除部分으로서의 그의 前貸資本에 比例하여 利潤(剩餘價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價格과 價値의 一致는 어디까지나 社會的 總資本으로서 考慮될 때일 뿐 各特殊生産部門에 있어서의 諸商品의 生産價格에는 價値와의 乖離가 發生하고 兩者의 一致는 異常的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諸商品의 價値가 不變인 경우에는 一般的 利潤率에 있어서 特殊部門으로부터는 獨立된 變動의 結果로서 생길 수 있고 둘째 一般的 利潤率이 不變인 경우에는 技術的 變化에 依하여 特殊生産部門 自體에 있어서 생긴 價値變動이며 이 部門의 不變資本에 形成要素로서 들어가는 諸商品의 價値變動의 結果로서의 價値變動에 의하여 그리고 셋째로는 이들 兩事情이 함께 作用하는 것에 의해서 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첫째의 경우는 商品의 社會的 價値 그 完結形態로서의 市場價値가 平均 利潤率에 따라 利潤으로 轉化됨에 의하여 生産價格으로 轉化될 때 價値와 價格의 不一致가 發生함을 말한다. 또한 둘째의 경우는 費用價格에 있어서도 價値와 價格의 不一致가 發生함을 말한다. “卽 最初에는 一商品의 費用價格은 그 商品의 生産에 消費된 諸商品의 價値와 같다고 假定되었다. 그러나 一商品의 生産價格은 그 같은 商品의 購買者에 대하여는 그 商品의 費用價格이므로 이리하여 費用價格으로서 他의 一商品의 價格形成에 들어갈 수가 있다. 生産價格은 商品의 價値와 一致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一商品의 費用價格——그 때에는 他商品의 이와 같은 生産價格이 包含되어 있다——도 또한 그 商品의 總價値中에서 그 商品에 들어가는 生産手段의 價値에 의하여 形成되는 部分以上 또는 以下 일 수 있다. 費用價格의 이 修正된 意義를 銘記하는 것, 따라서 또한 一特殊生産部門에서의 商品의 費用價格이 그 商品의 生産에 消費된 生産手段의 價値와 等置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誤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銘記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같이 資本制生産樣式下의 商品에 있어서도 特殊産業部門에 대하여는 價格이 價値에 一致하여 實現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農產物에 대하여도 그대로 適用된다고 할 수 있다. 資本主義的인 農業生産을 생각할 때 一産業部門으로서의 農業에서는 地代의 存在로 因하여 自己의 商品價値의 生産價格에의 轉形, 따라서 自己의 利潤의 平均利潤에의 還元에 대하여 制約이 주어진다. 그리고 農業生産物에도 非農業生産物과 같이 그 費用價格에는 價値로부터 乖離된 價格을 가진

生産手段이 들어가기 때문에 價格은 價値와의 不一致가 일어날 뿐 아니라 最劣等地의 生産物에 대한 費用價格을 超過하는 剩餘價値部分이 平均利潤 플러스 地代로서 반드시 實現된다는 保證도 없다. 왜냐하면 平均利潤을 넘는 超過利潤部分이 바로 그만큼 土地所有者에 의해서 地代로서 반드시 固定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諸點으로부터 資本主義의인 農産物도 需給均衡이라는 市場狀態를 前提로 하더라도 그 價値와 價格이 一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sup>(6)</sup> 여기서 特殊生産部門에 대하여 價値와 價格의 不一致를 論議할 때 그 原因中の 하나는 特殊部門으로부터는 獨立된 一般的 利潤率의 變動의 結果이고 다른 하나는 費用價格에 投入되는 生産要素中 不變資本이 價値와 價格이 不一致된 形態로 들어온 結果임을 注意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生産費를 費用價格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利潤率과의 關聯없이도 그 自體가 價値와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通하여 特殊生産部門에 있어서의 諸商品은 價値와 價格 및 生産費가 各各 不一致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生産費의 概念에 關聯하여 「리카아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sup>(7)</sup> 價値, 價格 및 生産費를 같은 것으로 보는 見解나 「마르크스」에서와 같이 그것을 費用價格으로 또는 生産價格으로 理解하는 것에 따르는 若干의 誤解와 混亂이 있다.

「리카아도」는 一方에서는 價格의 調節者로서 他方에서는 價値의 調節者로서 生産費를 使用하였다. 그는 또한 價値와 價格(=「自然價格」)을 같은 것으로 理解하며 그의 生産費 概念은 利潤과 賃金으로 된 것이어서 利潤을 包含하고 있다. 그런데 價値와 價格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은 그에게 있어서 平均利潤法則에 대한 明確한 認識을 缺했던 때문이므로 이를 且置하더라도 生産費에 利潤을 包含시킨 것은 여기서 問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이처럼 生産費를 때로는 費用價格으로, 때로는 生産價格으로 본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가끔 生産費概念에 대한 「마르크스」의 混用이라하여 지나치게 이를 解釋하거나 強調하는 論者도 있으나 其實 크게 問題로 될 것은 아니다. 먼저 이 問題에 대한 『資本論辭典』에서의 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 商品의 個個의 生産에 必要한 費用價格에 平均利潤을 加한 것을 生産價格이라고 「마르크스」는 불렀다. 그러나 地代를 展開함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는 이 生産價格에 生産費란 말을 가끔 使用하고 있다. 差額地代에 轉化된 資本의 超過利潤은 同一의 資本에 대하여 土地의 豊度の 差로부터 생기는 生産量

(6) 白川 清, 『農業經濟の價格理論』, pp. 98-9.

(7)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의 相違에 의하여 形成되는 것으로서 資本에 대하여는 그 生産物의 總販賣額으로부터 ‘資本 플러스 平均利潤’으로서의 生産費를 差引한 殘額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利潤論에서 價値의 生産價格化를 論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주어져 있는 生産價格을 前提로 하고 이것이 資本에 대하여 費用化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위에서 引用한 ‘資本 플러스 平均利潤’의 資本이 利潤論에서 費用價格이라고 하는 것에 對應하고 있다. 差額地代가 位置의 差, 例를 들면 市場에의 거리의 差로서 展開된다면 그것은 生産價格에 包含되는 運輸費로서 生産費化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生産費란 말은 「마르크스」에서도 반드시 上述의 意味에 만에 限한 것은 아니다. 例를 들면 『剩餘價値學說史』에서는 利潤論에 있어서 費用價格에 該當하는, 前貸된 不變資本部分과 可變資本部分과의 和에 대하여도 生産費란 말이 使用되고 있다. 如何間이 말은 『資本論』의 本格的인 用語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도 正當하게 理解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地代論을 展開함에 際하여 生産費를 生産價格의 뜻으로 使用한 部分的인 例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平均利潤概念의 生産價格을 超過하는 超過利潤의 差額地代로의 轉化를 說明코자 하여 便宜上 이를 使用했을 뿐이다. 即 總販賣額으로부터 所與의 生産價格을 差引하고 그 殘額을 差額地代로 說明코자 할 때 生産價格을 資本의 立場에서 費用化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全體系에 대하여 본다면 生産費는 어디까지나 費用價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生産費는 平均利潤을 加한 生産價格이 아니라 利潤이 包含되지 않은 費用價格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價値, 生産價格 및 費用價格(=生産費)의 關係를 C, V, M 및 P 로서 表示한다면 다음과 같다.

社會的 總資本에 대하여 보면 總價値 C+V+M는 總生産價格 C+V+P은 같다. 이는 剩餘價値總量 M이 前貸資本 C+V에 比例하여 그 資本의 有機的 構成을 묻지 않고 均等히 分配되기 때문이다. 即 相異한 諸生産部門에서 元來 支配되던 各各 甚히 相異하던 諸利潤率이 아니고 平均利潤率에 의하여 利潤(剩餘價値)의 平均利潤에의 轉化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C+V+M=C+V+P$ 이다. 그러나 特殊生産部門에 있어서는  $C+V+M$ 은  $C+V+P$ 와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 即 어떤 一生産部門에 대하여는 P가 社會的 總資本의 立場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M과 P가 반드시 一致하지 않으며 C속에 包含된 價値와는 乖離된 價格을 가진 投入要素로 因하여 C+V에 대하여도 價値와의 不一致가 發生하는 것으로 된다.

元來 “一商品의 費用價格은 그 商品에 包含되어 있는 支拂勞動의 量에만 關聯하고, 價

値는 그 商品에 包含되어 있는 支拂勞動과 不拂勞動과의 總量에 關聯한다. 生産價格은 支拂勞動과, 特殊生産部門에 대하여는 그 部門自體로부터 獨立的으로 規定된 定量的 不拂勞動과의 和에 關聯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原論的인 立場에 서서 特殊生産部門에 있어서 生産費를 價値와 結付시키는 것에서 이를 分離시켰고 또한 生産費를 費用價格 또는 生産價格의 어느 것으로 解釋해야 할 것이냐의 問題에 대하여 費用價格으로 解釋함이 正當한 것임을 보았다.

다음에는 이 費用價格이 如何한 要因에 依하여 規制되는 費用價格인가를 考察하여 보자.

資本主義的 農業生産을 前提로 한다면 農業에 있어서와 같이 有限하고 獨占되어 있으며 또한 資本에 의하여 自由롭게 創出되지 않는 土地를 그 重要한 生産手段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最劣等地<sup>(8)</sup>의 個別的 生産價格이 市場調整的 生産價格을 規定하고 市場價格은 이를 中心으로 變動한다고 말한다. 이때 農業生産樣式이 資本主義的인 것이 아니고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경우에는 勿論 市場調整的인 價格은 生産價格에 의해서가 아니고 最劣等地的 個別的인 費用價格에 의하여 規制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費用價格이 最劣等地的 가장 劣惡한 生産條件에서의 것인지 아니면 最劣等地的 平均的인 生産條件에서의 것인지가 問題로 된다. 即 그것이 限界費用인지 平均費用인지가 問題로 된다.

資本制下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商品은 그 個別的인 價値에 따라서가 아니고 一般的인 市場價値(Marktwert)에 따라서 交換된다. 換言하면 商品의 市場價格(Marktpreis)은 市場價値에 의하여 規制된다. 그것은 競爭의 두 가지 作用에 의하여 即 첫째 一部門內의 商品의 相異한 各個別的 諸價値에서 하나의 同等한 市場價値 및 市場價格이 成立되고, 둘째 相異한 諸部門間에 있어서는 相異한 諸部門間的 諸利潤을 同等하게 함에 의하여 그것이 可能해진다.

그러나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土地의 制限性」과 「經營의 獨占」의 存在로 因하여 어느 時期의 一定價格下에서의 穀物에 대한 社會的 欲望(需要)을 充足시키기 위하여서는 一定面積의 土地가 耕作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그 中 最劣等地에 있어서도 平均利潤이 確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土地生産物인 穀物의 市場生産價格은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8) 地代理論에 있어서 最劣等地란 現存하는 土地中에서 肥沃度나 位置等이 가장 劣惡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自然科學的인 概念은 아니다. 그것은 現存의 社會的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耕作되지 않으면 안되는 耕地中에서 豊度나 位置가 가장 劣惡한 土地를 말하며 多分히 社會的 經濟的으로 規定될 때의 概念이다.

個別的<sup>(9)</sup> 生産價格에 의하여 規制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個別的인 生産價格은 單純商品生産의 경우에는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個別的인 費用價格으로 된 다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個別的인 費用價格이라고 하여도 그 內容이 相異해질 수 있는데서 問題가 發生한다. 最劣等地에서는 勿論 豊도와 位置를 달리하는 諸土地에 投下된 等量の 資本의 生産力의 差異에 基因하여 發生하는 差額地代의 第一形態(=差額地代 I)는 없다. 그러나 資本投下の 樣式이 同時的, 併行的이 아니고 繼起的, 集約的인 投下에서 發生하는 差額地代의 第二形態(=差額地代 II)는 存在한다. 비록 最劣等地라 하여도 生産力이 서로 다른 資本을 逐次的으로 投下한다면 그곳에는 必然的으로 差額地代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最劣等地에 있어서 個別的인 費用價格의 內容이 相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差額地代 II의 存在에 基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最劣等地에 있어서의 差額地代 II의 存在에 根據하여 앞서의 市場價格을 規制하는 費用價格이 最劣等地的 投下資本中 가장 生産條件이 나쁜 卽 最劣惡한, 限界投資에 따라 規制되는 費用價格이나 아니면 最劣等地에서의 總投下資本의 平均的인 것에 의하여 規制되는 費用價格이나 하는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從來 흔히 最劣等地에 있어서 最劣惡한 生産條件에 의한 費用價格이 農産物의 市場價格을 規制한다고 主張하여 왔다. 이러한 限界費用의 立場에서는 論理는 다음과 같이 展開된 것이었다.

보다 優良한 土地에 投下된 資本 내지는 限界地(最劣等地)에서도 보다 有利한 條件下에서 投下되는 資本은 그 限界生産物보다 더 적은 生産費로서 生産物을 供給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여 決定된 市場價格에서는 一定의 超過部分이 생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差額地代, 특히 第二形態의 差額地代이다. 이 第二形態의 差額地代는 農業을 보다 集約化함에 의하여 當然히 커진다. 이 論理에 따르면 分割地農民 따라서 土地의 所有와 經營이 一體化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 最劣等地에서도 差額地代 II가 形成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最劣等地에는 差額地代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理解와 다를뿐 아니라 理論的으로도 同意할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土地所有者와 資本家が 同一人格인

(9) 여기서 個別的이라 함은 元來商品의 市場價値가 그 生産部門의 平均的 生産條件下에서, 또는 그 部門의 生産物의 大量을 이루는 商品의 個別的인 價値에 따라 規定되는 것임에 대하여 農産物은 優等地와의 平均概念이 아닌 最劣等地단의 價値에 의하여 規定됨을 意味하는 것이다.

경우에 대하여 “지금 土地種類 A라는 것으로부터 生産價格 即 資本補填 플러스 平均利潤을 造出할 만큼 市場價格이 昂騰하거나 낮거나 自身の 地所를 스스로 經營할 수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아마도 그에 대하여는 土地所有는 그의 資本을 投下하기 위한 어떠한 制限도 形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 경우에서와 같이 分割地農民도 土地所有가 資本投下의 制限으로서 作用하지 않기 때문에 最劣等地에는 費用價格을 넘는 超過分이 形成될 수가 없는 것이다.

限界費用을 主張하는 論者は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農業에 있어서 同一土地에의 繼起的 追加投資는 그 스스로가 平均利潤을 實現하지 못한다면 投下되지 않고, 그것 以前の 投資部分에서 생긴 超過利潤을 蠶食하는 것과 같은 生産性이 낮은 資本은 投下되지 않는다. 만약 그와 같은 投資가 있더라도 錯誤投資로서 撤收된다고 하는 것은 資本 自身이 가진 論理이다. 따라서 差額地代 第二形態論에서는 追加投資가 單獨으로 平均利潤을 얻고 그것 以前の 超過利潤을 蠶食하지 않는 投資로서 展開되지 않으면 안되며 最劣等地에서 생기는 差額地代는 土地所有의 介入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土地所有를 前提하지 않더라도 資本의 論理 그 自體로부터 必然的으로 最劣等地에도 地代가 생기게 된다.

以上이 限界費用을 主張하는 論者의 論據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重大한 誤謬가 介在되어 있다. 最劣等地의 差額地代論에서 追加資本 그 自身이 單獨으로 平均利潤을 얻어서 運動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資本의 運動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形成된 超過利潤을 土地所有가 地代化하고 그것의 平均利潤에의 均等化를 沮止하였기 때문이다. 即 最終的인 追加投資에 있어서 平均利潤이 實現된 것 처럼 보이게 된 것은 그 以前の 보다 有利한 條件으로 投下된 資本에서 發生된 超過利潤을 土地所有에 의하여 平均利潤化 및 差額地代化하여 追加投資에서의 平均利潤과 區分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土地所有가 資本의 運動을 制限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超過利潤의 平均利潤에의 均等化를 沮止하고 있지 않으므로 最劣等地에 差額地代 II가 累積될 수는 없게 된다. 結局 資本의 運動에 대하여 土地所有의 制限이 作用하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資本의 運動에 의하여 形成된 超過利潤을 固定化하지 못하기 때문에 農產物價格은 追加投資도 包含된 最劣等地的 總資本에서 規定된(平均的인) 個別的 生産價格의 水準에 의하여 規制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關係를 가지고 分割地所有農民을 類推하여 보면 그는 耕作地를 私有하고 있기 때문에 地代部分을 固定化할 必然性을 가지지 않고 擬制的으로 말하면 土地所有를 前提로 하지 않는(적어도 土地所有가 資本의 運動에 制約이 되지 않는) 差額地代 II에 있어서 資本의

運動法則과 같이 追加投資도 包含된 最劣等地에 있어서 總投下資本으로 計算된 費用價格水準이 農產物價格의 最下限을 規定하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結論적으로 分割地所有農民의 農產物價格은 最劣等地的 總投下資本에 의하여 規定된  $C+V$  라는 費用價格水準인 것이다.

다음은 本稿에서 問題로 삼는 農產物의 生産費概念에 보다 한걸음 더 接近시키기 위하여 生産費調査를 前提로 하고 그 生産費 即 費用價格의 具體的인 費目을 念頭に 두면서 費用價格의 內容을 다시 吟味하여 보자.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의 單純商品生産에 의한 農產物은 그 市場價格이 生産價格에 의하여 決定되지 못하고 費用價格에 의하여 決定되는 特殊性을 지닌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때의 價格이 生産價格에까지 騰貴하는 것은 平均利潤이 資本制 農業生産에 있어서 要求되는 것에 對比하여 必要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異常한 事情下에 있을 때 일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關係를 지나치게 平面的으로 解釋하여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는 價格이 費用價格에 의하여 決定되고 費用價格 即 生産費는  $C+V$  인 까닭에 生産費에는 利潤은 勿論말할 것도 없지만 利潤에서 派生되는 利子나 地代等도 包含될 수 없다고 主張하는 論者が 있음을 우리는 흔히 본다.

이들 論者の 見解를 檢討하여 볼 때 農產物價格이 費用價格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데에는 우리도 이들과 意見을 完全히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費用價格은  $C+V$  인 까닭으로 하여 利潤에서 派生되는 利子나 地代等은 生産費에 包含될 수 없다는 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 政策價格決定의 指標로서의 生産費라는 立場에서 볼 때 이를 지나치게 平面的으로 解釋하였다고 批判하지 않을 수 없다.  $C+V+P$  또는  $C+V$  가 意味하는 바는 資本制農業生産에 있어서 農產物價格이 生産價格( $C+V+P$ )에 의하여 決定됨에 대하여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는 平均利潤  $P$ 가 實現되지 않더라도 即 費用價格만으로도 再生産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C+V$  는 單純商品生産에 있어서 平均利潤이 實現되지 않더라도, 平均利潤의 實現과 關係없이도 農業의 再生産이 可能하다는 것 以外の 어떠한 內容도 包含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P$ 의 實現을 條件으로 하느냐 않느냐 만을 問題로 하는, 單只 그것만을 說明하는 극히 抽象的이고 單純化된 것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單純商品生産을 假定하더라도 實際로 物財費와 勞動費인  $C+V$  만으로 農業의 再生産이 可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農產物의 生産費는 이를 價値와 完全히 一致하는 것으로 把握하려고 해서는 안되



며 또 把握할 수도 없다.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는 農業生産은 物財費와 勞動費만으로 可能한 것은 아니다. 資本에 대한 利子, 土地에 대한 地代 其他 諸種費用이 必要하다. 이들 諸費用은 平均利潤을 實現코자 하는 必要의 與否에 關係없이 實際로 農業生産에 所要되는 것이다.

우선 資本制的인 農業生産을 假定하여 考察하여 보자. 이때는 最劣等地에 있어서 平均的인 生産價格이 市場調整的인 價格이다. 그 生産價格을  $C+V+P$  라고 하자. 여기서  $C$ 는 모든 物財費用이며  $V$ 는 勞動費用이다.  $P$ 는 平均利潤이며 그 속에 利子를 包含한다. 그런데 最劣等地에서의 生産價格이므로 差額地代는 勿論 들어갈 餘地가 없다. 그러나 絶對地代는 土地所有와 經營의 獨占으로 代償없이는 土地의 使用과 資本投下가 許容되지 않는다는 意味에서 만드시 支拂되어야 한다. 元來 絶對地代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社會的인 平均보다 相對的으로 낮은 部門의 資本에서 生産된 商品의 價値가 生産價格보다 큰 것에 基礎하여 그 商品의 價値以下, 生産價格以上의 點에서 需給關係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嚴密히 말한다면 農產物의 市場價格은 生産價格에 絶對地代를 加한 水準에서 決定된다. 故로 絶對地代는 剩餘價値로서의 利潤中에서 支拂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平均利潤  $P$ 와 直接的인 關聯은 없다. 租稅公課는 資本制 農業生産의 경우 그것이 土地所有에 대한 地租와 같은 것에는 當然히 地代中에서(地主의 負擔으로) 支拂되어야 하고 收益稅的인 租稅는 平均利潤中에서 平均利潤取得者인 農業資本家の 負擔으로 支拂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시 假定을 바꾸어 資本制農業生産이 아니고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 單純商品生産의 경우에는 이러한 諸關係가 如何히 變化하는가를 보자.

이때에는  $P$ 가 實現되지 않고 單純化된 表式으로는  $C+V$  뿐이다.  $C$ 部分은 一旦 變化가 없다고 하자. 그런데  $V$ 는 前者에 있어서는 雇傭勞賃이었으나 여기서는 家族勞動이 根幹이 되고 있으므로 內給部分으로서의  $V$ 의 評價問題가 發生한다. 이에 대하여는 次節로 미루고 다음에는 地代, 利子, 租稅公課등을 보자.

地代는 資本制 農業生産에서는 地主로부터 土地를 賃借하고 地代를 支拂하였다. 그런데 分割地所有에 있어서는 自作地인 所有地가 大部分이므로 短期的으로 보아 地代가 支拂되지 않고서도 農業生産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며 여기서의 土地所有는 資本投下에 대한 制限은 아니다. 그래서 地代가 支拂되지 않더라도 農業의 再生産에 支障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人口가 稠密하여 土地가 各種의 用途에 提供되어 이따한 形態이건 必然的으로 地代를 얻는 社會, 또는 他人에 貸付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만큼의 小作料는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犧牲으로 한 어느 程度의 補償이 必要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農業을 둘러싼 各産業部門에서의 資本主義의 發達에 따라 農業에 있어서도 資本主義的 發展은 不可避하며 小農經營에 대한 資本主義的 擬制은 보다 強化되는 것이므로 現實으로 貨幣化할 수 있는 去來의 對象이 되고 있는 土地의 所有에 대하여 어떠한 補償을 하지 않으면 長期的으로는 小農經營 그 自體의 維持, 存續을 不可能케 한다. 그리하여 土地에 대한 用役費로서 類地通常小作料에 의하건 土地資本利子라고 할 수 있는 賣買地價에 대한 一定利子率을 乘해서이건 어떠한 土地用役費를 生産費에 計上하여야만 再生産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資本利子는 資本制農業生産의 경우는 利潤에서 支拂되었지만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는 平均利潤이 一般的으로 實現되지 않으므로 平均利潤에서 利子を 支拂할 수는 없다. 그러나 固定資本과 流動資本 (다른 勞賃단을 分離하여 勞賃資本을 따로 들기도 한다)에 대한 利子は 單純商品生産의 경우에도 農業經營에 不可缺한 것이다. 그런데  $C+V$ 를 物財費와 勞動費만이라고 한다면 資本利子を 支拂할 餘地가 없으므로 再生産을 確保하기 爲하여 資本利子は 生産費의 構成費目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租稅公課 및 諸負擔金에 대하여 보면 課稅의 性質이나 對象이 調査作物에 關係가 있는 土地나 其他固定資産에 基準을 둔 것은 이를 生産費에 計上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地主에게 地代를 支拂하는 資本制農業生産의 경우에는 地主가 地代에서 地租를 負擔하지만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 生産費에 計上토록 한 土地用役費는 嚴密히는 地代라고 할 수 없으며 土地資本利子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固定資産에 대한 課稅도 元來 收益外에 課稅를 하는 것이 正當한지의 與否는 두고라도 別途로 이러한 租稅를 負擔할 餘地가 없으므로 生産費에 計上되어야 한다. 또한 收益稅的인 租稅負擔은  $C+V$ 로서 價格이 決定된다는 單純商品生産에 대하여는 課稅自體가 理論적으로 不當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收益稅的인 租稅負擔이 아닌 其他의 公課 및 諸負擔金은 農業生産, 보다 正確히는 調査作物과 關係를 가지는 것에 限하여 生産費에 計上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負擔은 다른 곳에서 支出될 餘地가 없으며 調査作物에 대한 耕作上의 費用으로 看做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資本利子, 土地資本利子, 租稅公課諸負擔金 등은 흔히 利潤에서 派生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지 혹은 平均利潤이 實現될 때에 問題로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實은 平均利潤의 實現與否를 묻지 않고, 農業의 再生産을 可能케 하는데 있어서의 必要與否를 問題로 삼는 立場에서 再生産에 不可缺할 경우에는 生産費의 費目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

서  $C+V+P$  또는  $C+V$  를 抽象的이며, 平均利潤의 實現與否以上을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러한 意味에서이다. 그러므로 生産費에는 利潤이 包含되지 않으므로 利潤에서 派生되는 利子나 地代 등이 當然히 生産費에 包含될 수 없다는 論理는  $C+V$  만으로 農業의 再生産이 可能하지 않는 限 誤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結論的으로 農産物의 生産費를 價値概念과는 別個의 것으로, 그리고 生産價格이 아닌 追加投資를 包含한 最劣等地的 總資本으로 規制되는 費用價格으로 把握하면서 同時에 單純한  $C+V$  로서 이를 把握하는 것이 아니라 農業의 再生産에 必要로 하는 諸種費用을 包含하는 것으로 概念規定코자 한다. 이러한 農産物의 生産費概念이야 말로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의 農産物價格이 追加投資를 包含하는 最劣等地的 總資本에 依하여 規制되는 費用價格(=生産費)에 의하여 決定되는 特殊性을 가졌다는 것과,  $C+V$  의 올바른 意味와 또한 政策價格의 基準으로서 農業의 再生産費로서의 生産費를 同時的으로 解明하여 주는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 IV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

우리는 앞서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의 農産物의 市場調整의 價格水準이 最劣等地的 平均的인 生産條件에 의한 費用價格에 의하여 規制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生産費概念의 規定하는 바에 따라 具體的으로 農産物의 生産費를 調査하고 算出하기 위해서는 먼저 生産費概念의 前半部를 이루는 最劣等地라는 概念을 具體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最劣等地란 現存하는 土地中에서 肥沃度나 位置 등이 가장 劣惡한 것을 意味하는 自然科學的인 概念이 아니며 그것은 現存의 社會的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耕作되지 않으면 안 되는 耕地中에서 豊度나 位置가 가장 劣惡한 土地를 말하는 多分히 社會的 經濟的으로 規定될 때의 概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內容的으로는 土地의인 條件과 經營的인 條件이 包含된 것이며 어느 한 條件이 越等히 他에 比하여 優良하다면 最劣等地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抽象的인 理論展開에 있어서는 最劣等地를 想定하는 것이 可能하지만 具體的으로는 이를 把握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이를 위하여 利用할 수 있는 資料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土地의인 條件이나 經營的 條件의 一面만을 把握해서는 안되며 兩者가 同時的으로 考慮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理由로 말미암아 便宜上 우리는 最劣等地를 最劣等經營으로 代置하고 이를 다시 最劣等規模로서 把握코자 한다. 最劣等地와 最劣等經營과는 반드시 同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最劣等地란 것이 元來 自然科

學的인 側面을 가졌으면서도 多分히 社會經濟的인 概念이었던 點이나 最劣等經營이란 것이 相當한 程度에 있어서 最劣等地를 土臺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點에서 큰 無理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最劣等經營을 最劣等規模로 把握하는 問題도 農業經營에 있어서 耕地規模가 經營의 規模와 優劣을 거의 絶對的으로 決定한다는 點에서 妥當性을 지닌다.

그런데 最劣等地的 具體的인 劃定問題, 即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問題는 以上에서 考察한 대로 經營規模로서 把握한다고 하지만 果然 그것을 어느 階層으로 劃定지를 것이냐 하는 것은 簡單하지 않다. 그것은 現存의 農業生産樣式에 基礎하여 再生産을 確保하면서 同時에 市場調整의 費用價格의 最下限을 規定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은 몇가지 側面에서 이를 捕捉하여 檢出하는 過程에서 類推的으로 劃定하는 수 밖에 없다. 다음에 몇가지의 側面과 거기서의 指標에 의하여 이를 吟味하여 보자.<sup>(10)</sup>

첫째로는 總家族勞動中 農業勞動이 占하는 比重으로서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을 考察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農業에서와 같이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는 家族勞動의 主된 投下場所는 營農部門이다. 그러나 價格規制的인 費用價格이 되기 위해서는 總家族勞動(時間)中 지나치게 적은 比率만이 營農에 投下됨으로써 實質的으로 食糧의 自給만을 充當할 뿐 價格規制와는 無緣한 階層은 이를 除外하여야 한다. 이러한 經營條件下에서의 費用價格은 지나치게 높게 評價되는 것이 一般的이며 限界生産農家階層이라 하여 最劣等生産條件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第3表>

就業狀況(戶當平均)

單位：人

區 分	家 口 員 數	營農從事者(A)	非 營 農 從 事 者		就 業 者 計(A+B)
			他職業從事者(B)	無 職 者	
0.5 町步未滿	5.26	2.52	0.10	2.64	2.62
0.5~1.0	5.99	3.01	0.09	2.89	3.10
1.0~1.5	6.83	3.51	0.09	3.23	3.60
1.5~2.0	7.46	3.61	0.08	3.77	3.69
2.0 町步以上	8.14	4.18	0.07	3.89	4.25
全 國	6.29	3.15	0.09	3.05	3.24

資料：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 64에서 作成

(10) 本稿에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하는데에는 外國產의 값싼 農產物이 大量導入되어 人爲的인 供給過剩狀態가 造成되어 있는 點이라든가 國家의 低農產物價格政策에 의하여 農產物價格이 非正常的으로 低水準에 머물고 있는 現實을 既定事實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要因에 의한 偏倚는 當然히 考慮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하여 各階層別로 利用할 수 있는 研究 또는 調查된 資料가 없어 不得已 그로 인한 偏倚는 無視되었다.

第3表는 各階層別 家口員數와 營農 非營農從事者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各階層別로 家口員數에 거의 比例하여 營農從事者數가 增加하고 있으며 他職業從事者는 戶當平均 0.1人未滿이다. 그리고 第4表는 耕地規模別 作業別 勞動投下時間을 나타내고 있는데 품앗이를 包含한 總家族勞動中 農外作業은 5~27%이고 이를 除外한 나머지는 모두가 農業作業이다. 그리고 各階層別로 本 總家族勞動은 最小인 0.5町步未滿의 1,364.30時間과 最大인 1.5~2.0町步의 2,710.47時間에 約 2倍의 勞動時間의 差가 있다.

<第4表> 耕地規模別 作業別 勞動投下時間(戶當平均)

單位：換算時間

區 分	總家族勞動 (품앗이包含)	耕種作業(A)	其他農業作業(B)	農業勞動 (A+B)	農外作業
0.5 町步未滿	1,364.30	731.21	202.38	933.59	45.86
0.5~1.0	1,978.69	1,247.68	294.31	1,541.99	436.70
1.0~1.5	2,475.78	1,749.32	334.11	2,083.43	392.35
1.5~2.0	2,710.47	1,984.68	326.23	2,310.91	399.56
2.0 町步以上	2,543.51	1,919.27	306.57	2,225.84	317.67
全 國	2,029.18	1,333.01	282.59	1,615.60	413.58

資料：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 111에서 作成

그런데 第5表는 앞서의 第3表와 第4表를 利用하여 總家族勞動과 農業勞動時間을 對比시켜 본 것이다. 第4表에서 0.5 町步未滿階層과 家族勞動時間 最大인 1.5~2.0 町步階層과의 總勞動時間의 2倍에 達하는 差異는 就業者數의 差異에도 起因하겠지만 그 大部分의 原因은 0.5 町步未滿階層의 경우 耕地規模가 過少한데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一旦 1.5~2.0 町步階層에서는 就業者(正確히는 營農從事者를 생각하여야겠지

<第5表> 修正된 總家族勞動과 農業勞動時間對比(戶當平均)

單位：換算時間

區 分	總家族勞動(1) (품앗이 包含)(A)	農業勞動(3)(B)	總家族勞動對 農業勞動(B/A)(%)
0.5 町步未滿	1,924.49	933.59	48.51
0.5~1.0	2,277.07	1,541.99	67.72
1.0~1.5	2,644.34	2,083.43	78.89
1.5~2.0	2,710.47	2,310.91	85.26
2.0 町步以上(2)	2,543.51	2,225.84	87.10
全 國	2,379.91	1,615.60	67.88

註：(1) 1.5~2.0 町步의 就業者 1人當 勞動時間 734.54(換算時間)을 各階層別 就業者數에 乘한 것임(本文參照)

(2) 2.0 町步以上 階層은 第4表의 實際投下된 總家族勞動時間數임.

(3) 第4表의 農業勞動(A+B)임

資料：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64, p. 111 및 前掲 第4表에서 作成.

단)가 耕地의 狹小로 因한 制約없이 勞動時間을 充分히 發揮하였다고 보고 이 階層의 就業者 1人當 勞動時間을 求하여 734.54時間을 얻고 이를 第3表의 各階層의 就業者數에 乘하여 階層別로 修正된 總家族勞動時間을 얻은 것이 第5表의 總家族勞動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 町步以上階層은 耕地規模의 狹小로 因하여 家族勞動投下時間이 制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實際 投下한 家族勞動時間을 그대로 使用하였다.

따라서 1.5~2.0 町步의 就業者 1人當 勞動時間으로 修正된 各階層別 總家族勞動時間과 實際 農業勞動에 投下된 時間과의 對比를 通하여 各階層別로 總家族勞動中 實質의인 農業勞動의 比重을 考察코자 하였다. 表에 의하면 0.5 町步未滿農家階層의 總家族勞動對 農業勞動比率은 48.51%이고 0.5~1.0 町步階層이 67.72%이며 耕地規模가 커질 수록 比率은 增大되고 있다. 0.5 町步未滿階層은 보다 細分된 調查資料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零細規模일수록 耕地規模의 狹小로 因하여 總家族勞動對 農業勞動比率은 보다 低下될 것이 明白하다. 이 0.5 町步未滿階層의 48.51%는 0.5 町步보다 더욱 零細한 階層을 包含하는 것이기 때문에 萬若 總家族勞動中에서 農業勞動의 比率이 적어도 50%는 되는 階層을 劃定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大概 0.5 町步階層을 若干 下廻하는 0.3~0.5 또는 0.4~0.5 町步階層이라고 類推할 수가 있겠다.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함에 있어서 이러한 總家族勞動에 農業勞動을 對比시키는 側面은 그 比率의 어느 點에 位置하는 階層을 限界生産農家階層이라고 보아야 할지를 斷定하기는 困難하다. 다만 總家族勞動中 지나치게 적은 比率로 農業勞動에 投下되는 零細經營規模階層은 그 費用價格이 지나치게 높게 될 것이며 主로 自家食糧充足을 爲한 것이므로 價格規制的인 費用價格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이 側面に 있어서는 적어도 總家族勞動中 50%以上은 農業勞動에 投下될 때에야 비로소 그 階層이 價格規制的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家族勞動과 農業勞動時間과의 關係에서 본 限界生産農家階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3~0.5 町步 또는 0.4~0.5 町步 階層이라고 類推할 수가 있게 된다.

둘째로는 限界生産農家階層을 類推하는 指標의 하나로서 農業所得의 家計費에 대한 充足度を 들 수 있다.

이러한 側面도 前述한 總家族勞動對 農業勞動關係를 考察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家計費에 대한 農業所得의 充足도에 있어서 耕地規模別로 커다란 隔差를 이루는 漸增하는 比率의 系列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適正한 比率에서 어느 階層으로 劃定되어 限界階層으로 推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에도 萬若 家計費中 農業所得이 적어도 50% 이상 차지 하는 階層이라야 비로소 거기서의 費用價格이 價格規制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

게 될 것인가? 이는 參考로 第6表를 볼 때 若干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農村에 있어서 1人當 飲食物費는 家計費의 53.11%(全國平均)를 차지하고 특히 耕地規模가 零細해질수록 그 比重이 커지고 있다. 이 事實로부터 農業所得 50%는 그것이 家計費의 50%以

<第6表> 耕地規模別 一人當 家計費對 飲食物費

區 分	全 國	單位：圓				
		0.5 町步未滿	0.5~1.0	1.0~1.5	1.5~2.0	2.0 町步以上
家 計 費	15,976	13,692	14,742	16,659	18,953	21,341
飲 食 物 費	8,485	7,987	8,185	8,704	9,510	9,669
%	53.11	58.53	55.52	52.24	50.18	45.31

資料：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94에서 作成

上을 飲食物費가 차지하는 것과 거의 等置되며 더구나 農業所得이 家計費의 50%에 未達하는 경우 그때에는 家計費의 切半以上을 農業以外的 所得源泉에서 調達하는 것이 되므로 이때의 農業經營이란 것은 價格條件의 變化와는 直接的인 關係없이 또한 要素投入의 構造도 지나치게 劣惡한 것이 되어 價格規制인 것으로 고기는 어렵다. 따라서 結果적으로 農業所得이 家計費의 적어도 50%는 되는 階層을 價格規制인 限界 生産農家階層이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한다.

第7表는 耕地規模別로 본 農家所得의 構成表이다. 耕地規模가 가장 零細한 0.5 町步未滿階層은 農業所得外에 9.4%의 兼業所得과 31.7%의 兼業以外所得을 얻고서도 農家所得은 2.0 町步以上 階層의 約 3 分の 1에 不適當하다. 그런데 우리들이 求하고자 하는 指標

<第7表> 耕地規模別 農家所得(戶當平均)

區 分	全 國	單位：圓				
		0.5 町步未滿	0.5~1.0	1.0~1.5	1.5~2.0	2.0 町步以上
農 業 所 得	(79.2) 88,812	(58.9) 42,203	(78.5) 73,987	(84.1) 110,096	(85.0) 146,112	(89.6) 195,500
兼 業 所 得	(3.5) 3,879	(9.4) 6,759	(3.6) 3,428	(1.9) 2,483	(2.9) 5,057	(△0.4) △ 870
兼業以外所得	(17.3) 19,492	(31.7) 22,710	(17.9) 16,828	(14.0) 18,281	(12.1) 20,769	(10.8) 23,529
農 家 所 得	(100.0) 112,201	(100.0) 71,672	(100.0) 94,243	(100.0) 130,860	(100.0) 171,938	(100.0) 218,159

資料：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 90

는 家計費에 대한 農業所得의 比重이므로 第8表는 다시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로부터 各階層別 負債利子和 租稅公課額을 얻고 第7表上의 農家所得에 대한 農業所得의 比率를 使用하여 農業所得의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負擔額을 計算하였다. 이것은 家計費에 負債利子和 租稅公課가 包含되지 않으므로 農業所得과의 比較에 있어서도 農業所得을 負債利子

< 第 8 表 > 耕地規模別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負擔額(戶當平均)

單位: 원

區 分	0.5 町步未滿	0.5~1.0	1.0~1.5	1.5~2.0	2.0 町步以上	全 國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A)	2,067	3,612	6,291	8,023	10,570	4,682
農家所得에 대한 農業所得比(%) (B)	58.9	78.5	84.1	85.0	89.6	79.2
農業所得의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負擔額	1,217	2,835	5,291	6,819	9,471	3,708
$A \times \frac{B}{100}$						

資料: 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90, p.129에서 作成

및 租稅公課負擔額을 差減한 可處分概念으로 對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過程으로 얻어진 것이 第 9 表이다.

第 9 表에 의하면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負擔額을 差減한 農業所得의 家計費에 대한 充足度는 0.5 町步未滿階層이 56.91%이고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充足度는 上昇하여 2.0 町步以上階層에서는 農業所得만으로도 家計費를 充足시키고 若干의 剩餘가 發生하는 것으

< 第 9 表 > 農業所得의 家計費 充足度

單位: 원

耕地規模別	區分	家計費(A)	農業所得 <sup>(1)</sup> (B)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 <sup>(2)</sup> 差減 農業所得(C)	B/A (%)	C/A (%)
0.5 町步未滿		72,018	42,203	40,986	58.60	56.91
0.5~1.0		88,305	73,987	71,152	83.79	80.58
1.0~1.5		113,783	110,096	104,805	96.76	92.11
1.5~2.0		141,393	146,112	139,293	103.34	98.51
2.0 町步以上		173,713	195,500	186,029	112.54	107.09
全 國		100,492	88,812	85,104	88.38	84.69

註: (1) 第7表上의 農業所得임.

(2) 農業所得(B)에서 第8表에 있는 農業所得의 負債利子 및 租稅公課負擔額을 差減한 可處分概念의 農業所得임(本文參照)

資料: 農林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65, p.84, p.90에서 作成

로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家計費에 대한 農業所得의 充足도가 50%는 되는 階層을 限界生産農家階層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第 9 表에서의 充足度는 0.5 町步未滿階層이 56.91%를 나타내므로 50%를 基準으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코자 하면 이 資料로서는 0.5 町步未滿의 耕地規模를 가진 農家階層에 限界階層이 있다는 것 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各階層別로 充足度の 上昇率로 보아 그것이 0.3~0.5 또는 0.4~0.5 町步階層에 있다고 類推할 수는 있겠다.

지금까지는 家族勞動에 대한 農業勞動時間과 農業所得의 家計費에 대한 充足度の 觀點에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考察하여 보았지만 다음에는 셋째로 商品化率을 基準으로 그것



을 생각하여 보자.

第10表의 米穀商品化率을 보면 米穀은 1965年産의 경우 全國平均商品化率은 49.9%로서 生産量의 거의 切半이 商品化되고 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0.5 町步未滿은 42.1%이고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商品化率은 上昇하고 있다.

그런데 商品化率을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을 위한 指標로 考慮할 때에는 前述한 두가지의 指標의 경우와는 달리 若干 問題가 複雜하여 진다. 우선 商品化率이 最少限 50%가 되는 階層을 限界階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가 問題로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米穀生産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이 아니고 單純商品生産이기 때문에 반드시 50% 以上の 商品化率

<第10表> 米穀商品化率(階層別 戶當平均)

單位 : %

區 分	全 國	0.5 町步未滿	0.5~1.0	2.0~2.0	2.0 町步以上
1964年(1)	47.8	33.1	44.5	50.2	61.3
1965年(1)	49.9	42.1	43.6	52.2	66.2

註 : (1) 1964年 및 1965年의 10月~翌年 9月 基準임.

資料 : 農協中央會 調査部, 『농협조사월보』 1967年 5月 pp. 24-27.

을 가진(적어도 50%가 되는) 階層이 價格規制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單純商品生産의 土壤 위에서 0.5 町步未滿階層이 生産量中 42.1%나 商品化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낮은 比率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0.5 町步未滿階層에서 1.0~2.0 町步階層에 이르기 까지 耕地規模上으로는 最少 約 4倍의 差異가 있으면서도 商品化率上으로는 不過 10% 程度밖에 差異가 없다는 것도 問題가 된다. 이러한 事實은 商品化率이라는 指標만으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하는 것에 無理가 많음을 말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各階層別 商品化率을 바탕으로 하면서 同時에 各階層別 農家戶數와 耕地面積을 考慮하여 限界階層을 考察키로 한다.

2.0 町步以上階層—事實 이 階層은 限界生産農家階層劃定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을 除外하면 0.5 町步未滿階層에서 1.0~2.0 町步階層에 이르기까지 商品化率의 差異가 적고 특히 0.5 町步未滿階層과 0.5~1.0 町步階層間에 거의 差異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의 論議의 出發點으로 한다. 第11表에 따라 農家戶數를 耕地規模別로 볼 때 0.5 町步未滿階層을 모두 커버한다면 戶數累積度數는 35%이고 1.0 町步未滿階層까지를 커버한다면 67%에 이른다. 그리하여 商品化率 42.1%(0.5 町步未滿)를 基準으로 하여 0.3~0.4 町步階層을 限界生産 農家階層으로 劃定하면 이 階層인 19%는 費用價格만이 커버되고 이 階層 以上の 65%에서는 費用價格 以上이 커버된다. 또한 萬若 43.6%(0.5~1.0 町步階層)를

基準으로 하여 0.5~1.0 町步階層을 限界生産農家階層으로 하면 이 階層인 32%는 費用價格단이, 이 階層以上에 屬하는 33%의 모든 階層에서는 費用價格以上이 커버된다.

이것은 또한 面積의 側面에서도 考慮될 수 있다. 1964 年產米穀의 경우 段步當生産量을 各階層別로 볼 때 全國平均이 719 l (粗穀), 0.5 町步未滿 729 l, 0.5~1.0 階層 709 l, 1.0

<第11表>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및 面積表 (1965年)

區 分	戶 數	%	累 積 %	面 積	%	累積 %
全 國	2,506,899	100.0		2,260,236.8	100.0	
0.1 町步 滿	69,843	2	2	5,445.4	0.2	0.2
0.1~0.3	360,982	14	16	80,909.5	3.6	3.8
0.3~0.5	470,015	19	35	194,862.1	8.6	12.4
0.5~1.0	793,864	32	67	603,025.9	26.7	39.1
1.0~1.5	414,723	17	84	517,775.2	22.9	62.0
1.5~2.0	228,582	9	93	397,330.9	17.6	79.6
2.0~3.0	139,599	6	99	346,020.6	15.3	94.9
3.0 町步以上	29,291	1	100	114,867.2	5.1	100.0

資料：農林部『농림통계연보』1966, pp. 52-3

~1.5 町步階層이 720 l, 1.5~2.0 町步階層이 727 l, 2.0 町步以上階層이 723 l로서 各階層間에 段步當生産量에는 別로 差異가 없다.<sup>(11)</sup> 그러므로 各階層別 面積比率을 生産量의 比率로 看做해도 큰 過誤는 없다. 그런데 前述의 商品化率에 關聯하여 0.5 町步未滿農家階層中 0.3~0.5 町步階層을 限界階層으로 想定한다면 이 階層에 該當하는 8.6%의 生産이 費用價格단, 그리고 生産量의 87.6%에 대하여는 費用價格以上이 커버되고 또한 0.5~1.0 町步階層을 그것으로 想定하면 그 階層에 該當하는 26.7%는 費用價格단이, 1.0町步以上の 38%에 該當하는 모든 階層에서는 費用價格以上이 커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米穀의 商品化率을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와 그 面積(生産量과 比例한다고 본)에 關聯시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考察한 結果 戶數나 面積에서 다같이 0.3~0.5 町步 혹은 0.5~1.0 町步階層이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對象으로 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두 階層이 商品化率로 보아서는 別로 差異가 없으므로 다른 어떤 妥當한 根據에 따라 어느 한 階層을 限界階層으로 劃定해야 함을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는 論議를 다시 原點에 돌려서 最劣等地란 것이 現在의 社會的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耕作되지 않으면 안되는 耕地中 豊度나 位置가 가장 劣惡한 土地를 말하며 多分히 社會的, 經濟的으로 規定될 때의 概念이었던 것

(11) 農林部, 『農家經濟調査 및 農產物生産費調査 結果報告』1964, p. 272 參照.

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0.3~0.5 町步階層과 0.5~1.0 町步階層과의 商品化率의 差異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當然히 現在의 社會的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劣惡한 條件下에서 生産되며 生産量의 87.6%以上の 費用價格을 커버하는 0.3~0.5 町步階層을 限界生産農家階層으로 劃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하는 問題를 家族勞動에 대한 農業勞動比率,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그리고 商品化率이라는 세가지의 指標을 가지고 各各의 側面에서 考察하였다. 그 結果 類推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0.3~0.5 町步 또는 0.4~0.5 町步階層이 限界生産農家階層에 該當한다고 推定하였다.<sup>(12)</sup> 이것은 여러가지의 조심스러운 假定 위에서 劃定된 것이지만 利用可能한 資料의 範圍內에서는 最劣等地에서의 平均的인 生産條件 即 現在의 社會的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耕作되지 않으면 안되는 耕地中 가장 劣惡한 條件의 土地를 劃定하도록 諸般 側面을 可能한 限 考慮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1964 年產米穀에 대한 植付地規模別 生産費와 對比하여 現在의 生産費調查結果와는 어느 程度 一致하는가를 보자.

第 12 表에 따라 各階層에 있어서 副收入不差引 生産費를 全國平均生産費에서 差引한 差額을 보면 1 段步未滿階層의 生産費는 平均을 越等 上廻하여 그 差額이 1,001 원이고 1~3 段步階層은 277 원, 3~5 段步階層은 42 원이며 5~10 段步階層은 △84 원으로 全國平均

<第12表> 植付地規模別 生産費(段步當) <米穀> 單位: 원

區 分	全 國	1 段步未滿	1~3	3~5	5~10	10~15	15~20	20 段步以上
生産費(副收入不差引)	8,066	9,067	8,343	8,108	7,982	8,012	8,168	8,008
全國平均과의差額		1,001	277	42	△84	△54	102	△58

資料: 農林部『農產經濟調查 및 農產物生産費調查 結果報告』1964, p. 278에서 作成

보다 적다. 여기서 絶對值로 보아 全國平均과의 差額이 가장 적은 階層은 3~5 段步階層이며 各階層別 差額의 變動으로 보아도 1964 年產米穀에 관한 限 3~5 段步階層이 限界生産農家階層인 것은 明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考察로서 劃定되었던 3~5 段步 내지 4~5 段步階層이 限界生産農家階層이란 것은 現在의 生産費調查의 結果로서도 檢證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生産費의 調查를 中庸生産費 또는 平均生産費

(12) 이러한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에 있어서 또다른 觀點에서 番作地帶, 田作地帶 및 混作地帶에 따라 各農區別로 勞力費의 比重이 달라지는 것에 着眼한 論者도 있으며 그것이 示唆하는 바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金炳台, 「米穀生産費論」, 中央大學校『경제학 논집』第2卷 第2號 pp. 44-5 參照.

가 아니고 前節에서는 定立한 生産費概念에 좇아 限界生産費에 의하여 行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階層이 限界生産費階層으로서 劃定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生産費方式에 있어서 가장 難點이 되고 있는 評價性費目에 대하여 評價方法 問題를 考察하여 보자.

## V 主要 評價性費目的 評價問題

### 1. 自家勞動의 評價

우리나라의 生産費調査에 있어서 自家勞動의 評價는 農林部 『農產物生産費 調査要綱 및 解說(1967年)』에 의하면 “自家勞動의 賃金評價는 男女別 能力換算時間數에 그 地方의 作業別 通常臨時雇勞賃에서 計算한 實勞動 1時間當 賃金を 乘하여 計算한다”(13)고하여 通常臨時雇勞賃에 의하여 評價할 것을 밝히고 있다.

大體로 自家勞動에 대한 評價의 基準은 從來 前記 農村臨時雇賃金에 의하는 方法外에 農業勞動의 再生産費라는 立場에서 農家の 生計費를 主張하는 경우가 많았다

農村에 存在하는 年雇, 季節雇, 臨時雇中에서 臨時雇의 賃金を 評價의 基準으로 삼게 된 것은 年雇가 稻作期와 같은 重要時期에 勞動을 安全히 確保하기 爲하여 常雇形態를 取하는 것이므로 賃금이 지나치게 低評價되는 傾向이 있고 季節雇는 反對로 지나치게 高評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日雇가 그 中間에서 適當한 것이라고 主張되어 왔다. 그러나 日雇(臨時雇)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存在하여 自家勞動評價에 便利하다는 多分히 便宜에 의한 것이지 理論的으로 首肯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農家の 生計費를 評價의 基準으로 생각하는 思考方式은 一見 自家勞動의 生産費가 生計費(=生活費)라는 意味에서 臨時雇賃金에 의하여 評價하는 것에 比하면 보다 妥當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家族勞動을 勞動力이라는 商品으로 擬制하고 그것을 生産費인 生計費에 의하여 評價한다 하더라도 그 生計費가 農家の 生計費인 點에서는 嚴密한 意味에서 理論的으로 正當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社會的인 總資本의 立場에서  $C+V+P$  라고 하였을 때의  $V$ 는 社會全體로 보아 勞動의 完全하고도 自由로운 移動이 前提된 위에서 各生産部門間에 勞賃의 隔差가 없는 均衡的인 勞賃이었다. 그런데 이를 農家の 生計費로서 評價한다 함은 現實的으로 農村勞動의 自由로운 移動이 強力히 沮止되고 있는 條件下에서 農村에 있어서의 貧困과 消費節約을 基礎로 한, 換言하면 二重

(13) 農林部, 『農產物生産費 調査要綱 및 解說』1967, p. 167.

構造를 前提로 한 것이며 이것이 社會的인 勞動力의 再生産의 觀點에서 보아 不當한 것은 自明한 것이다. 비록 小農經營이 支配的인 곳에서의 市場調整의인 價格이 C+V 라는 費用價格이라고 할 때에 있어서의 V는 現實的인 農家의 生計費概念의 V에 가깝다고 할지는 모르나 이를 長期 動態的으로 社會全體的인 立場에서 본다면 農家의 生計費가 올바른 自家勞動의 再生産費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觀點에서 自家勞動의 評價의 基準을 提示한다면 그것은 全產業勞賃率과 같은 賃金率이어야 하며 다만 都市에 대한 農村의 物價比率이 考慮되어 그만큼만 調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올바른 意味에서 自家勞動도 再生産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 2. 土地用役費의 評價

前記『調査要綱 및 解説』에 의하면 土地用役費의 評價는 “借用地는 實際로 支拂하는 借地料를 計上하며 借地料가 物納일 경우에는 現品引渡地의 時價로 評價하여 計上한다.” “所有地는 各種類의 地價를 65年 1月 1日 現在로 調査하여 그 地價에 年 10%의 比率을 그 해의 土地用役費로 한다”(14)고 되어 있다. 그리고 調査作物의 負擔比率은 “그 筆地 또는 筆枚에서 調査作物의 生産費計算期間中에 生産한 各作物의 生産額의 合計額에 대한 調査作物生産額의 比率”(15)로 計算하고 있다.

本稿에서 規定 定立한 農産物의 生産費概念에 의하면 土地用役費를 生産費에 計上하는 것은 妥當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借用地에 대하여는 借地料로, 所有地에 대하여는 土地資本利子의 立場에서 一定率을 乘하는 것도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로 되는 것은 1965年 1月 1日 現在의 地價를 基準으로 한다는 것과 年 10%의 利率을 乘한다는 點이다. 1965年 1月 1日 基準은 地價上昇率이 急激하지 않다고 假定하고 短期的으로 容認한다 하더라도(實은 每年 年初 또는 調査作物 耕作開始期가 보다 妥當할 것이지만) 年率 10%를 評價率로 한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흔히 土地資本利子의 計算에 있어 利率을 一般의 利率에 比하여 低利에 두는 理由로서 土地의 市價가 그 收益의 價値以上の 價格이기 때문이라는 見解를 主張하는 論者(16)가 있으나 이는 土地資本利子의 立場에서 土地用役費를 生産費에 計上하는 意義를 잘 못 理解한 데서 緣由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評價利率 10%는 農協의 貸出金利가 農事資金 15%(年利), 農林資金

(14) 前掲書, p. 172.

(15) 前掲書, p. 183.

(16) 石橋幸雄, 『農産物生産費計算』 p. 177 參照.

20% 및 23%等인 것과 對比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 資本用役費의 評價

資本用役費는 調査作物 生産을 위하여 投下된 資本에 대한 利子를 말한다.

『調査要綱 및 解説』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內容을 보면

固定資本：水利用 構築物의 部分現在價 大農具의 部分現在價, 農舍의 部分現在價

流動資本：種苗費, 肥料費, 防除費, 諸材料費, 水利費中 支拂水利費 및 水利用 構造物의 修理維持費, 農具費中 大農具賃借料 및 修理維持費와 小農具費, 農舍費中 農舍賃借料 및 修理維持費, 畜力費

勞賃資本：勞力費 이다.

資本用役費는 借入資本用役費와 自己資本用役費로 나누어 計算하며 “借入資本은 實際로 支拂하는 利率을 適用하고 自己資本은 年 12%(月 1%)를 適用하여 計算한다”(17)

이 資本用役費에 대하여는 住宅과 農用建物과의 區別이 困難하다든지 農具의 價額이 너무 적다든지 家族經營의 生産費計算에 있어서는 原價의 償却金과 修繕費를 支出하면 利子를 따로 計算하지 않더라도 經營은 繼續될 수 있다고 하여 資本利子의 計算을 反對하는 수도 있으나(18) 그 主張에는 理論的인 妥當性을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慢性的인 農家負債의 累積과 農事資金의 不足狀態下에서 農業經營을 계속하는 條件에서는 償却費와 修繕費만으로 農業資本의 所要를 充當하고 經營을 持續시킬 수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問題는 生産費에의 計上 與否가 아니라 資本利子의 利率이다.

### 4. 租稅公課 諸負擔金의 處理問題

評價性費目에 대한 評價의 問題와는 다른 것이지만 租稅公課 및 諸負擔金を 農產物의 生産費에 計上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우선 『調査要綱 및 解説』에서의 定義를 보면 “租稅公課諸負擔金은 調査農家에서 負擔한 農家로서의 一切의 國稅, 地方稅, 公課金 및 負擔金を 말한다”(19)고 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租稅中 ① 國稅에 相續稅, 通行稅, 登錄稅, 印紙稅, 關稅, 噸稅와 ② 地方稅에 土地稅, 財產稅, 自動車稅, 屠畜稅, 其他 目的稅가 包含되며, 公課金中 部落協議費, 道路修理

(17) 農林部, 前掲書 p. 194.

(18) 石橋幸雄, 前掲書 p. 188 參照.

(19) 農林部, 前掲書 p. 113

費가 包含되고, 諸負擔金에는 山林組合費, 苗木組合費, 共濟組合費, 養蜂組合費, 煙草耕作組合費, 畜產組合費, 青年會費, 婦人會費, 赤十字會費, 大韓結核協會費, 學校寄附金이 包含된다.

그리고 範圍로는 “租稅中 農業과 關聯되지 않은 것은 計上하지 않는다”<sup>(20)</sup>고 한다. 우리는 앞서 農產物의 生産費概念規定에 있어서 課稅의 性質이나 對象이 調査作物에 關係가 있는 土地나 其他 固定資産에 基準을 둔 것은 生産費에 計上되어야 하며 收益稅의인 租稅負擔은 課稅自體가 理論적으로 不當하다고 指摘하였다. 그리고 收益稅의인 租稅負擔이 아닌 其他의 公課 및 諸負擔金은 調査作物과 關係를 가지는 것에 限하여 그 負擔을 다른 곳에서 支辨될 餘地가 없기 때문에 生産費에 計上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前記의 『調査要綱 및 解説』의 內容中 地方稅인 土地稅, 財産稅, 自動車稅 등은 農業生産과 直接關聯을 가지므로 計上이 當然하다. 그러나 相續稅 등은 이를 어떤 性質의 租稅로 理解하여 生産費費目에 計上하였는지는 그 根據가 疑心스럽다.

生産費에 대한 租稅公課諸負擔金の 計上은 課稅의 性質과 調査作物과의 關係를 稅目別로 各各 檢討하여 計上 하여야 하며 『調査要綱 및 解説』에서와 같이 單純히 “農業과 關聯되지 않은 것은 計上하지 않는다”는 原則만으로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나 生産費의 概念과 農業生産樣式에 비추어 보아 稅目別로 반드시 計上되어야 하는 것만을 計上해야 한다.

## VI. 結 語

지금까지 우리는 農產物의 生産費에 관하여 政策價格決定의 一指標로서의 生産費補償方式의 意義와 農產物生産費의 概念을 定立하는 問題를 考察하고 ‘追加投資를 包含하는 最劣等地에 있어서 平均的인 生産條件으로 規制되는 費用價格’으로 生産費를 規定한 後 이에 좇아 우리나라 農業에서 最劣等地的의 具體化, 即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을 試圖하였다.

그리하여 그 結果 限界生産農家階層은 0.3~0.5 町步階層 내지 0.4~0.5 町步階層에서 劃定되는 것으로 推定하였다.

그리고 끝으로는 主要한 評價性費目の 評價問題와 租稅公課諸負擔金の 處理問題를 簡單히 考察하였다.

지금까지의 考察에 의하면 生産費補償方式은 現在 우리나라에서 實施되고 있는 패리티

(20) 農林部, 前掲書, p. 114.

方式에 比하여 農業의 再生産을 確保하는 立場에서 보아 보다 客觀性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政策價格決定에 있어서 그 算定方式은 마땅히 生産費補償方式으로 復歸해야만 한다고 結論할 수 있다.

그리고 農産物의 生産費에 대한 概念定立도 지금까지의 生産費調查方法이나 그 構成費目を 檢討할 수 있는 支柱로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지금까지는 經濟理論上의 生産費와 實際生産費調查에 있어서의 生産費間에는 相容할 수 없는 相違가 있는 것 처럼 그릇 認識하여 왔다. 그러나 '가장 理論的인 것은 가장 現實的인 것'이라는 意味에서 本稿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平面的으로 解釋하던 費用價格概念에 대하여 政策價格決定의 指標로서의 生産費의 實際調查라는 立場에서 그 内部的 經濟的인 關聯을 解明하고 實際로 調査코자 할 때의 生産費라는 것을 抽象的이고 單純化되었던 生産費의 概念에서 如何히 導出하고 適用할 것인가를 解明코자 하였다.

本稿에서 定立한 生産費概念은 農産物의 生産費調查에 있어서 그 調查方法이나 生産費에 들어가는 費目과 그 各各이 지니는 內容이 우리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 것과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中 특히 指摘될 수 있는 것은 本稿에서 概念規定된 生産費가 限界生産費였음에 대하여 現在 實際 調査中인 生産費는 그것이 中庸生産費 또는 平均生産費라는 것이다. 卽 現在 農林部나 農協에서 조사하는 生産費는 各階層을 網羅하여 調査하고 그의 總和平均에 의한 中庸 내지 平均生産費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考察을 通하여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이 限界生産費는 中庸 乃至 平均生産費에 比하여 農産物價格決定上의 特殊性에 비추어 보다 鞏固한 理論的인 根據를 가지는 것이므로 最劣等地의 劃定 卽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問題만 解決이 된다면 限界生産費를 調査 算出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立場에서 家族勞動에 대한 農業勞動의 比率,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商品化率等の 指標로서 限界生産農家階層을 劃定코자 試圖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一試論에 不過하므로 보다 現實的이고도 嚴格한 假定下에서 더욱 精密化된 指標로서 이를 劃定하여 生産費調查를 實際로 限界生産費調查로서 實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指摘될 수 있는 것은 限界生産費概念에서 보아 現在の 生産費調查 構成費目이 우선 費目만으로서는 큰 差異가 없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中庸 내지 平均生産費로서 算定되어도 반드시 妥當한 것은 아니라는 點이다. 本稿에서는 限界生産費와 中庸 또는 平均生産費와의 差異나 中庸生産費를 擇할 때의 費目構成등에 대하여 따로 考察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다만 本稿는 어디까지나 限界生産費概念에 의한 考察이었으며 評價性費目の 評



價問題도 그러한 概念에 따랐던 것을 附記하여 둔다.

本稿는 農產物의 生産費概念을 定立하고 限界生産農家階層의 劃定을 試圖하는 것을 主된 對象으로 하고 評價性費目的 評價의 問題는 比較的 簡單히 다루었지만 評價性費目的 評價 問題도 各各에 대하여 매우 重要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에 別途 考察코자 한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